

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 목 차 ||

1. 2023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평가 진행일정)
2. 주요 변경사항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4. 세부평가기준
5.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2023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1)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요

가. 목 적

-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나.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1호(2021. 9. 30.)

다.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일부 평가항목 공동 확인)

라. 평가대상

- **당년도(2022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당년도(2022년)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대 종합건설사업자 간, 중소 종합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1. 2023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 신청사의 규모별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신 청 사	협력업자 인정 (O)	협력업자 불인정 (X)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 건설사업자 · 전문 건설사업자 · 건설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 건설사업자 · 건설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

** 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시공업 등

①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①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 근거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1. 2023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2) 평가결과 우대사항

- 공공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시공능력 평가액	감 경 건설법상 벌점
	조달청		지자체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60	2.0	3.0	0.5	6%	-0.5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50					-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40	1.5	2.2	0.4	5%	-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30	1.0	1.4	0.3	4%	-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20	0.5	0.5	0.2	3%	-

1. 2023년 상호협력평가 개요

(3) 2023년 평가 진행일정 및 방법

내 용		일 정	세부 방법
상호협력평가 신청 준비업무	교재·신청시스템 제작 및 배포 (시스템에서 동영상 시청 가능)	(교재) 1월초 (시스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안내시스템(siljuk.cak.or.kr)에서 상호협력평가 신청시스템 신청·결제업체(회원사 포함)에 본회에서 교재 직접 발송(2.1~) 교재파일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1월초~)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입력	~3.1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의사항 : 회원사(시도회), 비회원사(본회) 신고안내시스템, FAQ를 통해 개별 문의 가능
신청·접수	신청서류 접수	3.1(수)~3.1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스템에서 입력자료 온라인자료전송(제출) ※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검토·평가	업체별 사실확인서류 요청 및 온라인제출	3.22(수)~4.2(일)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대상 확인) 신고안내시스템 > 평가결과확인 > 사실확인서류요청 (제출방법) 신고안내시스템 > 마이페이지 > 평가항목별 입증서류 전자파일(pdf)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은 교재 참고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	6.8(목)~6.14(수)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안내시스템 > 중간평가결과 > 결과확인후 미비서류 보완 제출
확 정	최종 평가결과 발표	6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평가결과 확인서 증명발급 개시	발표 이후 (7.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우대사항 등 적용

2. 주요 변경사항

(1) “협력업자 관리대장” 전문건설업종 신고방법 변경 : (대)업종·주력분야 입력

- '22년부터 개정·시행된 건산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종(이하 '대업종')**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를 추가 선택·입력하여야 함
 - ※ 종합건설업은 전년도와 동일(변동없음)
- 동일 대업종(ex.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여러 주력분야(ex.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보유한 경우, 각각의 주력분야를 모두 입력
- 신청시스템에서 전년도 자료를 '자료내려받기'한 경우, 업종/주력분야가 자동으로 변환·입력되어 있음

(2) 전년도 협력업자 인정기준 변경 : 전년도(2021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과 당년도(2022년)에 등록한 '주력분야'가 동일한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

- (적용대상) “공동도급실적”, “하도급실적” 평가시, 당년도(2022년) 협력업자 등록일 전 공동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2021년 이전 하도급계약 포함)에는 **‘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인정
- (변경기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 개편에 따라, “**전년도 협력업자**”는 전년도(2021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ex.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당년도(2022년)에 등록한 주력분야(ex.토공사,포장공사..)가 동일한 경우 인정

2. 주요 변경내용

(3) “하도급실적” 상호시장 진출 공사 등의 신고 여부 : 평가 비대상

- 종합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도급받은 **전문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그 **전문공사 기성액 및 협력업자 하도급기성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분모·분자 모두 제외)

* '21.1.1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공공사, '22.1.1일 이후 입찰 공고(또는 도급계약)된 민간공사

-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인 신청사가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실적 평가 기준

- (신청사 : 중소기업) 종합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 및 하도급실적 신고 불가

- 따라서, '23년 실적신고시 ¹⁾아래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액을 포함하여 자사 종합공사 기성액으로 신고·인정된 경우, 하도급실적평가지 '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서 하도급 준 해당 기성액을 ²⁾제외

《 ¹⁾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실적 제외 대상공사 》

- ▶ 건산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1건 원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공사 등)이면서, 원도급공사가 다음 날짜 이후의 공사일 것
- 공공공사 : '21.1.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 민간공사 : '22.1.1일 이후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 ²⁾입증방법 》

- ▶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23.3.22~4.2, 잠정) 중 입증서류 제출 (서류목록 교재 참고)

- (신청사 : 대기업) 종합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 및 하도급실적 신고 가능

- 단, 건산법 개정 전 종합건설사업자(협력업자)에게 하도급 준 실적(분자)이 '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 해당 금액을 합산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전년동일)

평가항목	배 점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52점	4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37점	37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27점	27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8점)	(8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전년동일)

평가항목	배 점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4. 신인도	18점	28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3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감점, 없으면 기본점수)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10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점)	(5점)	
5. 가 점	+19점	+19점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5점)	(+5점)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다.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등 협력실적	(+3점)	(+3점)	
라.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8점)	(+8점)	
총 계	100점	100점	

4. 세부평가기준

(1) 공동도급 실적

(1) 공동도급 실적 평가 (대기업만 평가)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frac{\text{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text{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60%이상	5
		50%이상~60%미만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30%미만	0
나. 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frac{\text{④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text{③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총기성액}}$	40%이상	5
		30%이상~40%미만	4
		20%이상~30%미만	3
		15%이상~20%미만	2
		15%미만	0

▶ '가', '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단, 당년도 신청사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① 공동도급 실적 건수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신청사의 공동도급 현장수로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받은 결과에 따라 판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기준)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건수

- ①의 현장 중 협력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기성실적이 발생한 건수
- '전년도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 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년도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공동도급 실적 건수를 인정

③ 지역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총 기성액

- 고시 개정·시행(20.1.1~) 이후 체결된 공동도급계약한 공사현장 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 협력업자의 **본사소재지가 해당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및 도) 내에 있는 경우**, 해당공사의 공동도급 총기성액(구성사 기성액 합계)을 합산

④ 지역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③의 현장에서 발생한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사실확인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전산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에 사실확인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2)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평가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액 <hr/> ① 신청사 총기성액	45%이상	20	40%이상	25
	35%이상~45%미만	15	30%이상~40%미만	20
	25%이상~35%미만	10	20%이상~30%미만	15
	15%이상~25%미만	5	10%이상~20%미만	10
	15%미만	0	10%미만	0

① 신청사 총기성액

-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통해 인정된 '국내 기성액 합계'로 산정('23.5월말 확정)
-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도급받은 전문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그 전문공사 기성액 및 협력업자 하도급기성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①(분모), ②(분자) 모두 제외

* '21.1.1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공공사, '22.1.1일 이후 입찰 공고(또는 도급계약)된 민간공사

- 건산법 개정(종합간 하도급 허용)으로 **중소기업인 신청사가 '23년 실적신고시 1)아래공사에 대해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액을 포함**하여 자사 기성액으로 신고·인정된 경우, **'①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서 하도급 준 기성액 2)제외**

☞ 중소기업 종합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는 상호협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협력업자로 신고 불가)

☞ ①(분모), ②(분자) 모두 제외

《 1)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기성실적 제외 대상공사 》

- ▶ 건산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1건 원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 등)이면서, 원도급공사가 다음 날짜 이후의 공사일 것
 - 공공공사 : '21.1.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
 - 민간공사 : '22.1.1일 이후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 2)입증방법 》

- ▶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23.3.22~4.2) 중 '다.사실확인서류'에 기재된 입증서류 제출

- **대기업인 신청사는 종합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단, 대기업 제외), 하도급실적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①(분모), ②(분자) 모두 포함

- 단, 건산법 개정 전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협력업자)에게 하도급 준 실적이 '①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②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액'(분자)에 **종합건설사업자(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액이 포함되는 경우, '①신청사 총기성액'(분모)에도 동 금액을 합산**

4. 세부평가기준

(2) 하도급 실적

② 협력업자 하도급 기성액

- **당년도(2022년) 협력업자 등록 후**, 해당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액을 합산
- 하도급 기성액에 대한 당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이전년도(~2021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당년도(2022년) 협력업자 등록일 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로 등록·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하도급 기성액을 인정

※ 신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당년도 공사실적이 없더라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야 차년도 평가시 하도급기성으로 인정 가능

★★전년도 협력업자 인정 기준★★

전년도(2021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 vs. 당년도(2022년)에 등록한 주력분야가 동일한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

하도급공사 (계약일자)	21년도 하도급실적 평가내용		22년도 하도급실적 신고내용					하도급실적 인정 여부
	업종 (a)	당년도 협력업자	(대)업종 (b)	주력업종 (c)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	당년도 협력업자	전년도 협력업자	
OO공사 (22.9.1)	미신고	-	철콘	철콘	'22.1.1.	인정	-	인정
□□공사 (22.9.1)	미신고	-	철콘	철콘	'22.9.2.	인정	불인정	불인정 (전년도협력업자 미신고→불인정)
XX 공사 (21.3.1)	토공	인정	지반 포장	토공	'22.2.1.	인정	인정	인정
★★ 공사 (20.3.1)	포장	인정	지반 포장	토공	'22.1.1.	인정	불인정	불인정 (a≠c→전년도협력업자불 인정)

- **당년도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건설공사에 한해 하도급 기성실적 인정
 - ‘① 총기성실적’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정 불가
 - 단, 차년도에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당년도에 불인정되었던 하도급 실적을 차년도 하도급 실적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 차년도에 원도급 기성실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당년도 중 원도급공사 준공 등)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공사의 차년도 1분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까지 당년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당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기성액이 미발생**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다른 평가항목**(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낙찰률’, ‘하도급대금 현금성조기지급’, ‘전자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세부내용에 대해 입력하되,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을 ‘0’으로 입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신청사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실적도 하도급 실적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세무서에 제출한 ‘22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3)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②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text{① 신규 하도급 건수}}$	70%이상	10
		50%이상~70%미만	8
		30%이상~50%미만	6
		10%이상~30%미만	4
		10%미만	0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합계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 합산	120건이상	10
		80건이상~120건미만	8
		50건이상~80건미만	6
		30건이상~50건미만	4
		3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 건수

-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신규 (최초)하도급계약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하도급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하도급률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하도급건수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하도급률확인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4) 하도급 낙찰률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90%이상	5
	86%이상~90%미만	4
① 도급계약액 중 협력업자의 하도급부분금액 총액	82%이상~86%미만	3
	82%미만	0

① 도급계약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금액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액 중 해당 하도급부분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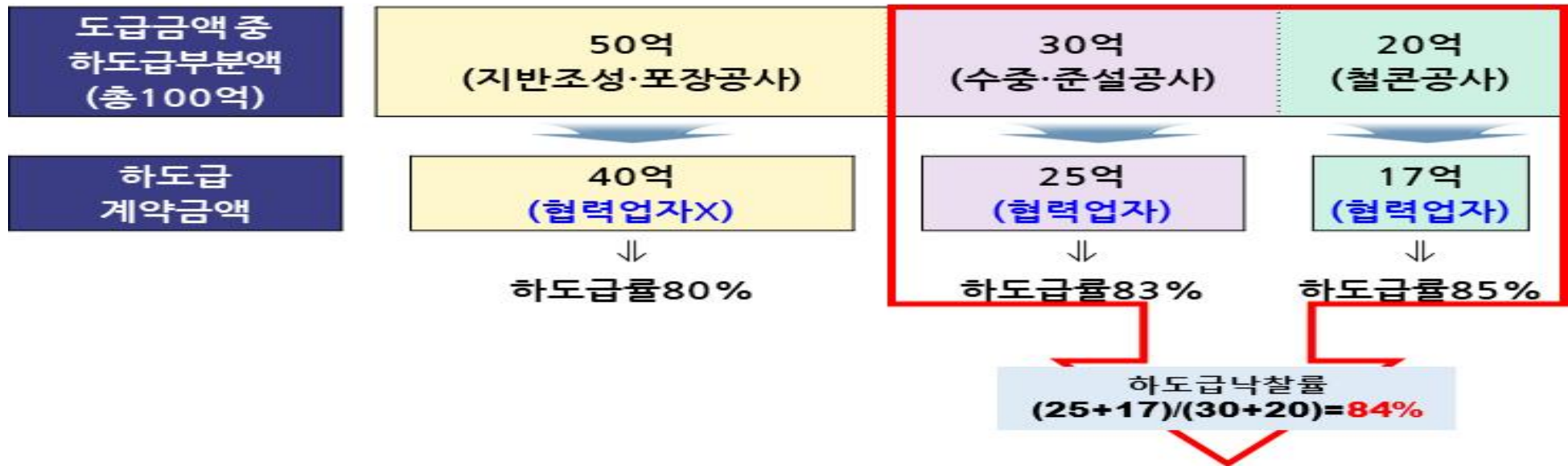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계약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당년도 하도급기성액이 '0'인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건도 **포함**

③ 평가기준

- 산정방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 낙찰률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산출된 하도급낙찰률이 82% 미만인 경우, ‘(3)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항목 평가결과가 만점* 이면 기본점수 2점 부여 *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이 70% 이상이거나, ‘적정 하도급건수’가 120건 이상인 경우
- 협력업자 하도급실적에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으로 신고된 **모든 건**에 대해 세부내용(분자·분모값)을 입력하여야 평가 및 점수 부여됨
 - 신고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 중 **1건이라도 미입력**된 건이 있으면 ‘0’점으로 평가됨

[하도급낙찰률 계산방식]



사실확인서류

하도급률확인서, 하도급계약 관련 보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4. 세부평가기준

(5)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5)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②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hr/> ① 신규 하도급건수	60%이상	8
		40%이상~60%미만	6
		20%이상~40%미만	4
		10%이상~20%미만	3
		10%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계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합산	120건이상	8
		100건이상~120건미만	6
		80건이상~100건미만	4
		60건이상~80건미만	3
		6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신규 하도급건수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액)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②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전부를 법정기일 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수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로 **인정**
 -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 협력업자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 건도 평가에 포함
 - 하수급인의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사유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단,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자신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공사로 대표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 대표사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하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공사대금수령및하도급대금지급내역서, 대금 수령/지급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6) 전자하도급계약 실적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전자하도급계약 건수 ----- ① 신규 하도급건수	80%이상	4
	60% 이상~80%미만	3
	40% 이상~60%미만	2
	20% 이상~40%미만	1
	20%미만	0

① 신규 하도급건수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포함**

② 전자하도급계약 건수

- ①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
- 전자문서용 **인지세**가 **납부(완납)**된 전자하도급계약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사실확인서류

전자하도급계약서(수입인지 표시분),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7) 협력업자 재무지원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frac{\text{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text{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계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사이상	5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
		20개사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22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예 시》

‘2022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 A건설(주)’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총협력업자 업체수는 1개로 적용

②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당년도에** 뒷장 ‘재무지원 인정 유형’에 따라 **1개 협력업자(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업체)에 대해 **동일 지원유형 내***에서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 재무지원 업체수에 포함
* 타 지원유형 간 지원금액 합산되지 않음
- 하나의 협력업자와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라도 1백만원이상 재무지원한 경우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사실확인서류 신청한 지원유형별(뒷장 ㉠~㉡) 제출서류 상이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4. 세부평가기준

(7) 협력업자 재무지원

< 재무지원 인정 유형 (㉠~㉢) >

- ㉠ 원도급계약 이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등 원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조기)지급한 경우
- ㉡ ①당년도 신규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②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신청사가 당년도에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 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의 ③인지세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①,②,③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인정)

[하도급계약액별 인지세 지원 인정금액]

①하도급계약액	②인지세액	③인지세 지원 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	2만원	6만원
3천만원 이상	4만원	12만원
5천만원 이상	7만원	20만원
1억원 이상	15만원	50만원
2억원 이상	15만원 ~	100만원

- ㉢ ①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②신청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행하고 ③협력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발행을 면제한 경우로서, 아래 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별 ④수수료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①,②,③,④를 모두 만족한 경우 인정) ※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현장으로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이 면제된 경우 재무지원에 비해당

[하도급계약액별 수수료 지원 인정금액]

①하도급계약액	④수수료 지원 인정금액
4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 ㉣ 동반성장펀드, 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 등으로 협력업자의 대출을 지원(대출이자 지원, 무이자 대출지원, 이자율 우대 등)한 경우, 이자지원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협력업자와 당년도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시 인정 가능)

(8) 협력업자 교육지원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hr/>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합계	③ 지원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합산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점수
		200인 이상	160인 이상	120인 이상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① 총협력업자 업체수

- 2022년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의 “총 업체수”를 적용
- 하나의 업체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 **당년도**에 뒷장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른 ‘일반교육(가)’, ‘법정윤리교육(나)’을 지원한 협력업체수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업종별로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였다더라도 업체수는 1개로 인정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시 **인정 가능**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당년도**에 뒷장 ‘교육지원 인정기준’에 따른 ‘일반교육(가)’, ‘법정윤리교육(나)’을 지원한 협력업체수 합산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시 **인정 가능**

④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

- 협력업자 등이 뒷장 ① '인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교육(㉠)', '법정윤리교육(㉡)'을 ② 이수하고, ③ **당년도(2022년)에 신청사**가 교육실비를 **지원(입금)**한 경우 인정 (①,②,③을 모두 만족한 경우 인정)
 - * 건진법상 건설기술인 교육, 법정 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불인정
- **신청사가 당년도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 협력업자가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선지급하고 그 **협력업자에게 당년도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형태 모두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사·구성사 모두 해당 협력업자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⑤ 산정방법 관련 우대사항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합산
- 뒷장 '인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정윤리교육(㉡)'(온·오프라인 교육)에 신청사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자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원수의 3배를 '②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③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사실확인서류 인정 교육과정별(뒷장 ㉠,㉡) 제출서류 상이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 인정 교육과정 (㉠~㉡) >

구 분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일반교육)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법정윤리교육)
교육대상	협력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신청사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자의 임원
교육기관 /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hrd.go.kr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건설” 직종에서 검색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 등 자격증 취득교육,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환급과정* 이수한 경우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 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 교육과정 : 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건설사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

(9) 협력업자 기술지원

평가항목	점 수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 2점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 2점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통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

▶ 각 평가항목별 해당되는 협력업자가 다수인 경우, 하나의 항목 내에서 최대 배점(대기업 10점, 중소기업 5점)까지 평가점수를 중복하여 산정 가능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협력업자가 신청사로부터 「기술개발비 수령 확인서」 상의 기술개발지원 항목으로 당년도에 1백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시 **인정 가능**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당년도에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를 등록한 경우로서 신청사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시 **인정 가능**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게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 ‘건설시공’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자와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실시권 또는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원한 것으로 인정

④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전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 신청사가 건설시공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년도에 협력업자에게 기술이전을 위해 해당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협력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시 **인정 가능**

⑤ 상생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경우

-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당년도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최종확인*을 받은 경우
- *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시 **인정 가능**

⑥ 비 고

- ‘하나의 협력업자에 대해 수차례 중복하여 기술지원을 한 경우라도 지원업체수는 1개로 판단

사실확인서류 신청한 지원유형별(①~⑤) 제출서류 상이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10) 상생협의회체 운영실적 평가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 수
가. 상생협의회체 운영 활성화	아래 1) 또는 2)	1)20%이상 또는 2)20개 이상	2
	1) $\frac{\text{② 상생협의회체 운영 현장수}}{\text{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1)10%이상 또는 2)10개 이상	1
	2) 상생협의회체 운영현장수 합산	1)10%미만이고 2)10개 미만	0
나. 상생협의회체 운영성과	③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회체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2
	④ 자체적으로 상생협의회체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 (1개 현장당 점수 부여)		1

▶ '가'(최대 2점), '나'(최대 3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인정

① 신규 공공공사 현장수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공공공사로서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23.2월)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하도급계약 건이 없는 원도급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② 상생협업체 운영 현장수

- ①의 당년도 신규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업체를 구성·운영한 현장수를 합산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업체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에 따라 공사기간 중 매월 상생협업체 운영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인정

※ 공동도급 구성사인 경우 상생협업체 구성원으로서 협정서 상 기명 날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③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업체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감사패 수상(현장소장 수상 인정)

④ 상생협업체 운영성과

- 상생협업체 운영성과를 입증서류에 따라 상생협업체 운영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원도급업자가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하되,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 상의 '평점'이 아닌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별도 평가

사실확인서류 신청한 평가방법별(①~④) 제출서류 상이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1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 실적 평가

평가기준	점수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3
② 시·도지사 표창	2

①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 당년도에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공공기관장, 단체장 표창은 불인정

② 시·도지사 표창

- 당년도에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제외)로부터 표창 수상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 불인정)

사실확인서류 표창장 등 수상증빙서류(표창장에 상호협력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2) 제재처분 감점

▶ 아래 '①의 원인행위'로 '②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③점수' 적용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주요내용	관련조항	처분기관
•부실시공	건설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관련	지자체
•하도급 자격 제한, 하도급관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불공정행위 금지 등	건설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관련	지자체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48조 관련	공정위
•건설법 등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관련	국가·공공 기관 등
•건설법 등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관련	지자체 등

② 제재처분 유형	③ 점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제재처분 원인행위에 따라 감점 상이)	-1 / -2*
과태료 1회당	-2
벌금 또는 고발 1회당	-3
과징금 1회당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당	-10

① 제재처분 원인행위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범위반행위로 한정
-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② 점 수

-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경우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 하도급 관련은 처분 1회당 1점 감점, 부실시공, 갑질, 부당내부거래 관련(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공정거래법 제45조~제48조)은 처분 1회당 2점 감점
- 건산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하도급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사실확인서류 별도 서류제출 없음 (※관련부처 등을 통해 자료 확인)

(13) 사망사고 현장 평가

산정방법	평가기준		② 점수
	당년도 및 전년도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당년도	0명(2년이상)	5
		0명(1년이상)	3
		0명초과~1명이하	-3
		1명초과~2명이하	-5
		2명초과~3명이하	-10
		3명 초과	-13

①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정·확인된 **당년도(2022년) 사망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신청사에게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재 책임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사망자수는 산정시 제외 (추후 산업재해 확정되는 경우 차년도 평가에 반영)
- 공동도급 현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지분율을 고려하여 사망자수를 안분 계산

② 점수 산정방법

- **당년도(2022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당년도(2022년) 및 전년도(2021년)에 사망자수가 '0'명인 경우 5점 부여**
- 다른 신인도 평가분야(표창 실적, 제재처분) 점수와 합산하여 대기업은 최대 18점, 중소기업은 최대 28점 내에서 감점

사실확인서류 별도 서류제출 없음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료 확인)

4. 세부평가기준

(1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1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산정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frac{\text{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text{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times$	70%이상	+5.0	60%이상	+5.0
	60%이상~70%미만	+4.0	50%이상~60%미만	+4.0
	50%이상~60%미만	+3.0	40%이상~50%미만	+3.0
④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개월수 평균	40%이상~50%미만	+2.0	30%이상~40%미만	+2.0
③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30%이상~40%미만	+1.0	20%이상~30%미만	+1.0
	20%이상~30%미만	+0.5	10%이상~20%미만	+0.5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0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국내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누계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장은 제외

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

- ①의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한 현장수 합산
 - 원수급인이 **협력업자를 통해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원수급인·하수급인·임금/자재장비업자가 합의하여 원수급인이 임금/자재장비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인정
 - ※ 원수급인이 직접 인력고용, 인건비 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없음
- ①의 민간공사 현장 중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으로 협회에 신고(‘23.3월) 되고,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원칙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③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 ②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공사개월수’는 20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의 계약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 단, 계약연월이 1.1일 이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시작일을 1.1로 설정하고, 준공예정연월이 12.31일 이후인 경우 시스템 활용 종료일을 12.31.까지로 설정

④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개월수 평균

- ③의 총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 (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수의 하도급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하도급공사와 마지막으로 지급된 하도급공사를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사실확인서류

근로자공제회에서 발행한 현장별 '공제가입자별 퇴직공제자료 이행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15)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평가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대기업	중소기업	
① 해외건설공사로서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① 해외건설공사

- 20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협력업자의 당년도 (해외)기성실적이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공사

②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 신청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건수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자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건은 구성사도 인정

사실확인서류 별도 서류제출 없음 (*해건협을 통해 확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16) 건설혁신 선도기업 협력실적 평가

평가기준	점수
①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②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① 건설혁신 선도기업

- 국토부에서 선정*한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 중 ‘국내시장 진출분야’ 및 ‘스타분야’에 선정된 업체로서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된 업체

②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 '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인정된 건설공사 중 ①기업과 **당년도 신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형태로 협력한 경우로서 해당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 자기건설공사에 대해 협력업자와 상기 형태의 협력관계가 발생한 경우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건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사실확인서류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17)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평가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 <hr/>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80%이상	+8
	65%이상~80%미만	+6
	50%이상~65%미만	+4
	35%이상~50%미만	+2
	20%이상~35%미만	+1

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국내 민간 건축공사로서 '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자기공사에 대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건 포함

②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

- '19년 7월 15일 이후* 원도급 계약한 국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당년도(2022년)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현장수를 합산
* 관련고시 개정·시행일
- 실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한 경우 사용년도의 실적으로 인정(하나의 현장에 대해 여러해에 걸쳐 일체형 작업발판이 설치·사용한 경우 1회만 인정)

③ 비 고

-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누락 또는 미신고한 공사를 당년도에 실적신고한 경우 ‘①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및 ‘②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수’에 모두 적용

사실확인서류 장비임대업체와 계약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

5. 신청관련 유의사항

(1) 제출 후 수정 불가

- 상호협력평가 신청은 협회에 3월15일까지 신청시스템(<https://sangho.cak.or.kr>)에서 온라인 자료전송·제출, 이후 추가 또는 정정은 불가능
 - 신청기간(3.1~3.15) 중 **온라인제출 후**, 자료를 수정하여 재제출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라인자료 전송을 재전송**하여야 함
- 최종 온라인전송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확인 후 제출 요망

(2) 허위서류 작성, 제출시 제재 조치

-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는 3년간 상호협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는 PQ 등 입·낙찰시 우대 중지, 시공능력평가액 재산정(시평 허위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부정당 제재 요청 등 조치) 등 제재 조치

(3) 차년도 평가 대상공사 성실신고

- 이월되는 공사(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등)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지 반영(하도급실적 등)되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평가지 수정·변경 불가

5. 신청관련 유의사항

(4) 사실확인서류 제출기한 준수 및 사전 준비

- 사실확인서류는 제출기한(3.22~4.2.잠정) 내에 서류원본을 스캔하여 전산파일(pdf) 형태로 신고안내 시스템(<https://siljuk.cak.or.kr>)에서 업로드하여 제출

(5) 요청한 사실확인서류에 대한 제출 필수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검토과정 중 협회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류 등 입증서류 미보완시 해당 평가항목 모두 불인정 (0점 처리)

(6)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은 6월 중순(6.8~6.14.잠정) 신고안내시스템(<https://siljuk.cak.or.kr>)을 통하여 업체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상기 기한 내에 추가 사실확인서류를 보완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